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3
----------	-----

발의연월일 : '99. 6.

발의자 : 박래환 외 3명

1. 개정이유

공무원이 아닌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 지급기준을 각종 위원회별로 구분하고 있으나 위원회별 여비지급 기준이 동일하므로 위원회별로 각호로 규정하고 있는 여비기준을 통합하여 조문의 본문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공무원이 아닌 각종위원회 위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기준이 위원회별로 각호로 구분되어 있으나 각호의 여비지급 기준이 모두 동일하여 본 조례 제4조중 각호를 삭제하고 제4조 본문중 “다음 기준에 따라 여비”를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로 개정.

3. 근거법규 :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다음 기준에 따라 여비를”을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로 하고, 같은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1. <u>울산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u> :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p> <p>2. <u>구세심의회위원회위원</u> :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p> <p>3. <u>기타 각종위원회 위원</u> :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p>	<p>제4조(여비)</p> <p>.....</p> <p>.....</p> <p><u>.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u></p> <p>.....</p> <p><u>1.~3. (삭 제)</u></p>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73)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
중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99. 6. 16

나. 발 의 자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박래환의원 외 3명

다. 위원회 회부 : '99. 6. 24

라. 위원회 상정 : '99. 6. 25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박래환의원)

공무원이 아닌 각종위원회 위원이 공무로 출장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지급 기준이 각종 위원회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각호의 여비지급 기준이 모두 동일하여 위원회별로 각호로 규정하고 있는 여비기준을 통합하여 조문의 본문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4조중 각호를 삭제하고 제4조 본문중 “다음 기준에 따라 여비”를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로 개정하려는 것임.

4.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 송원수)

본 조례안은 제4조(여비)중 “공무원이 아닌 각종위원회 위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여비를”을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로 하고 1, 2, 3호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